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로 주난방을 하는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해드립니다

0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난방수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 차상위계층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자격 기준일은 1차 신청기간은 '23. 3. 9일, 2차 신청기간은 '23.3.24일 기준으로 적용

☑ 난방수단 기준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

☑ 지원 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02 지원방법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이용권 형태		
발급 방법	전용 체크카드 신청방법 ① 모바일 카드신청 QR코드 이용 ② 전화 신청 하나카드 ARS(1599-4353) ③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 카드 신청 기간: 1차 신청 완료자는 2023년 3월 27일부터, 2차 신청 완료자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카드 신청 및 발급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03 지원금액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차상위 계층 세대
	'22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22년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1인 세대	343,800원	592,000원	592,000원
2인 세대	257,200원		
3인 세대	146,600원		
4인 이상 세대	8,40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는 59.2만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22년 한시적 지원)

04 수급 신청 및 사용안내

☑ 신청기간

- 1차 기간: 2023년 3월 10일 (금) ~ 3월 24일 (금)
- 2차 기간: 2023년 3월 27일 (월) ~ 4월 7일 (금)
- ※ 카드 신청 기간: 1차 신청 완료자는 2023년 3월 27일부터, 2차 신청 완료자는 2023년 4월 10일부터 카드 신청 및 발급 가능

☑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 (월) ~ 12월 31일 (일)

☑ 사용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실물카드 또는 종이쿠폰으로 현장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배달비 포함)
 ※ 종이쿠폰은 분실·도난·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및 세대원, 친족 등 대리인 신청 가능

☑ 난방용 등유·LPG 전용 체크카드는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확인)

- 월 >> 1, 6 • 화 >> 2, 7 • 수 >> 3, 8
- 목 >> 4, 9 • 금 >> 5, 0

